





보건복지부	보 도 참	<b>고</b>	자 료
배 포 일	2020. 12. 9	. / (총 26	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장양 정 석담 당 자한 연 수		044-202-1711 044-202-1714
국무조정실	과 장 김성훈		044-200-2293
보건정책과	담당자 박현수		044-200-2295
서울특별시	과 장 송은철		02-2113-7660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유효연		02-2133-7669
경기도	과 장 윤덕희	전 화	031-8008-5420
감염병관리과	담당자 최문갑		031-8008-5422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팀장박 미 라담 당 자안 제 현		044-202-1790 044-202-1797
문화체육관광부	과 장 권 도 연		044-203-3151
스포츠산업과	담 당 자 이 창 호		044-203-3156
식품의약품안전처	과 장 최종동		043-719-2051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심 연		043-719-2054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중환자 병상 확보현황 및 계획,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중환자 병상 확보현황 및 계획,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 관리방안,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 센터 등 어르신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이러한 취약시설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 △사망률이 높아
     지고 △중환자 병상 부담도 가중되며 △동일집단 격리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도 커진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원을 받아 원내 감염 관리 강화, 선제검사 확대,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점검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당부하였다.
- □ 정 본부장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진단검사·이송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 행안부에게 자가격리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지자체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세심하게 보완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감염발생 빈도가 높은 취약시설, 방역 사각지대 등에 대한 방역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행안부에게는 '현장점검지원단'을 내실있게 운영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각 부처에게도 소관시설·업종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 하였다.













# 1 확진자 발생 현황

- □ 이번 3차 유행의 중심 지역인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유행의 확산 폭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 12월 9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3.~12.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080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82.9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440.3명으로 75.5%를** 차지하고 있다.
    -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 처음으로 500명을 초과하였다.
    - \* (124.) 463명  $\rightarrow$  (125.) 400명  $\rightarrow$  (126.) 470명  $\rightarrow$  (127.) 422명  $\rightarrow$  (128.) 384명  $\rightarrow$  (129.) 524명
    -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남권과 경북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환자가 조금 감소하는 양상이다. 지난 1주일(12.3.~12.9.) 동안 1일 평균환자 수는 142.6명으로 경남권 62.9명, 충청권 35.7명, 호남권 22.4명, 경북권 13명 등이 발생하였다.

#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3.~12.9.)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40.3명	35.7명	22.4명	13명	62.9명	7.4명	1.1명
60대 이상	139.7명	7.9명	1.7명	3.7명	28.1명	2.6명	0.1
<b>즉시 가용 중환자실</b> (12.8. 9시 기준)	12개	1개	4개	4개	11개	5개	6개

- 최근 1주일(12.3.~12.9.)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1,287명**으로 **1일 평균 183.9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 (12.5.) 121명 → (12.6.) 125명 → (112.7.) 126명 → (12.8.) 134명 → (12.9.) 149명











- □ 정부는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 잠복 감염을 줄이기 위하여 **선제적, 공격적으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 먼저,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는 경우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 의뢰하 거나 선별진료소 방문을 안내하도록 관련 협회와 협력 중이다.
  - 수도권의 경우 어제(12.8.화)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주중에는 야간인 오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하였다.
  - 또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하여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있다.
    -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와 타액검사를 적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폭넓은 검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 2 중환자 병상 확보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중환자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하며 의료 대응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중환자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하여 최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24병상 등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177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 12월 8일 기준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치료병상은 25 개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8개를 합하면 총 43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 최근 국내 발생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현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 < 최근 2주간 위중증 환자 발생 현황 및 사망자 현황 >

구분	11.26.	11.27.	11.28.	11.29.	11.3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위중증	78	77	78	76	76	97	101	117	116	121	125	126	134	149
사망자 사망자	2	1	6	1	3	0	0	3	7	4	5	4	3	4

- □ 정부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전환,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적극적인 인력·물자 손실보상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역량을 총동원하여 12월 말까지 총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 우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중 중환자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최대한 전환할 계획이다.
    - 최근 **24개 병상**을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 의료자원 및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상태가 일시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 치료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 심폐질환, 악성종양, 만성신부전, 임산부, 영아 등 고위험군 환자 포함











- 이미 병상은 확충되어 있으나,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필요한 의료자원 수요를 파악한 후 적극지원하여 중환자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 서도 병상을 확충 중이며,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가동 예정이다.
- □ 이와 함께 **병상 활용 효율화**도 추진 중이다.
  - 지난 12월 7일 **격리해제기준을 합리화**하였고, 이를 통해 재원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전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속 적으로 전실·전원 조치하여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 만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 등도 검토한다.
  -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단기간에 소개 가능한 중 환자 병동을 기관 당 10~20개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 이를 위해 권역별 국립대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여 중환자 치료 가능 인력 투입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특정 지역에 코로나19 중환자만을 치료하는 **임시병원 개념인 모듈병원을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 투입하여 중환자를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 감염병 전담병원은 4백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12월 8일 기준 **총 4,900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가동률은 65%로 1,714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이 중 수도권의 가동률은 75.4%로 558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 생활치료센터를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여 12월 8일 기준 총 23 개소, 4,727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가동률도 58.7%로 낮아졌으며, 1,954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다.
    -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가동률이 62.7%로 1,340명의 입소 여력이 있다.
    - 이에 더해, 이번 주 **3개소를 추가 개소**하며 약 570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3 이동량 분석 결과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 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12월 5일~12월 6일)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7,825천 건,** 비수도권 **28,687천** 건, 전국은 **56,51**2천 건이다.
    - 직전 주말(11월 28일~11월 29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0.6%(155천 건) 증가, 비수도권은 5%(1,506천 건) 감소하여 이동량 감소가 정체되는 경향이다.











- \* 수도권 : (11.14.~15.) 35,890천건 →(11.28.~.29.) 27,670천건 →(12.5.~6.) 27,825천건 비수도권 : (11.14.~15.) 38,143천건→(11.28.~29.) 30,193천건→(12.5.~6..) 28,687천건
-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2.5%(8,065천 건), 비수도권은 24.8%(9,456천 건) 감소하였다.

###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한편, 지난 8월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중 **수도권**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25,043천 건**(8월 29일~8월 30일)**까지 감소**하였으며, 현재는 이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신 국민께 감사를 표하고, 강화된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긴장감을 갖고 조금 더 노력을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4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로부터 **'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 문체부는 겨울스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겨울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을 막고자 한다.
  - 겨울스포츠는 동호회 등 **다수**가 함께하고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곤돌라·리프트 탑승 등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 이에 따라 겨울스포츠 활동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 먼저, 가족 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한다. 리프트·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등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한다.
    - 마지막으로 스키복, 스키장비, 스케이트 및 고글 등 **신체에 접촉** 하는 물품은 가급적 개인물품을 사용한다.
  - 한편,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된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5단계부터는 집합 금지된다.
-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기본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조치, ▲1.5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2단계에서는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금지, ▲3단계부터 집합 금지된다.
- □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 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5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로부터 **'민간 외식산업부문 방역수칙 자율실천 유도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회 와의 소통,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식약처장은 지난 12월 8일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자율 방역활동 실천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민간의 자율 방역활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먼저, 지난 8월 지자체가 비말차단시설, 방역위생물품 등의 지원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현재법제처 심사 중이다.
- **방역수칙 준수 우수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협회 자율지도원의 활동범위를 한시적으로 비회원사까지로 확대하여 자율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영업자가 방역 수칙을 보다 쉽게 준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자율점 검표'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적극 실천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등의 유인책(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 추가적으로 전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17일(목)부터 12월 19일(토)까지 3일간 대국민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 음식점을 이용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주류 산업협회와 함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핵심 메시지를 인쇄한 보건용 마스크 10만 장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 6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가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수능시험 감독관 중 희망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검사한 결과, 검사자 875명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 이와 함께 요양시설·요양병원 등 **감염취약 시설에 대하여 2주 간격으로 정기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 한편, 12월 8일(화)부터 12월 28일(월)까지 유흥시설,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한다. 자치구별로 집중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주 2회이상 점검하고, 업소별 주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주·야간으로 점검을 이원화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을 막기 위해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공동생활권인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수** 도권 공동대응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인접 지역의 생활치료센터·병상 등 **방역자원을 공동** 으로 활용하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을** 일치시키는 등 공동대응 필요사항과 조치 내용을 공유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8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393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6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527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64명 감소하였다.
  - 어제(12.8.)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 12월 8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2,157개소, ▲학원 474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619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중요한 방역수칙이나 행정명령 위반, 검사 불응·방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 ▲마스크 착용 등 일상 활동 방역수칙 위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모임·식사 금지 등 위반,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검체 채취 등 검사 불응 또는 방해 등 역학조사 지연·거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계도·과태료·고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 붙임 > 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3.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
  - 4. 감염병 보도준칙
-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의 일반관리 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 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 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 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 집합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ul> <li>▶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li> <li>▶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li> <li>▶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li> <li>-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li> <li>-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li> </ul>
실내체육시설	▶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ul> <li>▶ 집합금지</li> <li>★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li> <li>▶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li> </ul>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b>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b>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 <b>좌석 두 칸 띄우기</b> ▶ 음식 섭취 금지
PC방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ul> <li>▶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이·미용업	▶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8m <sup>2</sup>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종합소매업)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식 코너 운영 중단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 제한 유지
  - \*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 (인원 규모 불문)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 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 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붙임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 다중이용시설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sup>\*</sup>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구입단메 <del>중</del> 포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니케어스자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스탠딩공연장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 <b>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 음식 섭취 금지
= 11.11 -1.1 =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ul> <li>▶ 음식 섭취 금지,</li> <li>▶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li> <li>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li> <li>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li> </ul>
독서실스터디카페	<ul>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m²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괸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 인원 30% 이내로 제한
  -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모임·행사)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 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 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등 자제
  -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 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붙임3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

(12.8. 기준)

	지	역	단계조정내용					
卍	권역	시도	기간/지	[역	조치 단계	<sup>운화</sup> 가조치 내용		
1		서울	12.8.~12.28.	서울 전지역	2.5(†)	∘(목욕장업)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금지		
2	수도권	경기	12.8.~12.28.	경기 전지역	2.5(↑)	∘(학원) '21년 대입, 직업훈련외 집합금지 ○(아파트) 헬스장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금지		
3		인천	12.8.~12.28.	인천 전지역	2.5(↑)	·(파티룸 등) 숙박시설 주관 연말행사 금지		
4		세종	12.8.~12.28.	세종 전지역	2(↑)	∘(피시방)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칸막이 유무 무관 ∘(원스트라이크 아웃) 피시방, 목욕장업		
5		대전	12.8.~12.28.	대전 전지역	2(↑)	-		
6	충청권	충북	12.9.~12.28.	충북 전지역	2(†)	<ul> <li>(모임·행사) 2.5단계 기준 적용(50인↓)</li> <li>+농협 등 만간단체 선거운동 금지 타시도 가족과 방문 초청 자제 등(결혼장례식은 2단계 적용)</li> <li>(종교활동) 합창 등 노래행위 금지</li> <li>(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자 타지역 이동방문 금지 권고, 집회, 종교활동 참여 금지 권고 등</li> </ul>		
7		충남	12.8.~12.14.	충남 일부지역	2(↑)	○(목욕장업) 사우니한증막 등 발한시설 운영금지 ○(마트·백화점) 시식금지 ○(아파트 등) 단지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편의점 22~05시 매장내 취식 금지		
8		광주	12.7.~12.28.	광주 전지역	2(↑)	∘(집합금지) 방문·다단계·방문판매업 등		
9	호남권	전북	12.8.~12.28.	전북 전지역	2(†)	∘(사회복지시설) 이용인원 제한(50%↓)		
10		전남	12.8.~12.28.	전남 전지역	2(†)	-		
11	경북권	대구	12.8.~12.28.	대구 전지역	2(↑)	-		
12	성독년	경북	12.8.~12.28.	경북 전지역	2(↑)	-		
13	경남권	부산	<u>12.1~12.14.</u>	부산 전지역	2(↑)	∘(노래연습장) 초·중·고등학생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격렬한 GX류 운동 금지 ∘(학원) 대입 외 관악기·노래강습 금지 ∘(사적모임) 10인이상 모임 취소 강력권고		
14		울산	12.8.~12.28.	울산 전지역	2(↑)	-		
15		경남	12.8.~12.28.	경남 전지역	2(↑)	-		
16	강원	강원	<u>12.8.~12.14.</u>	강원 일부지역	2(†)	춘천, 원주, 강릉, 횡성, 영월, 정선, 철원, 양구		
10	0년	0 년	<u>12.8.~12.14.</u>	강원 일부지역	1.5( ↑ )	됆태쌤쓕촧횂疄했뗀괭양		
17	제주	제주	<u>12.4.~별도명령시</u>	제주 전지역	1.5( ↑ )	-		













# 붙임4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워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첚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